

# 한눈에 보는 2009년도 사료정책



안 규 정  
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

## I. 현 황

### 1. 배합사료 가격 관련 동향

■ '08년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수급 요인이 악화된 가운데 해상운임 상승, 곡물 수출국의 수출세 부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

- 이에 따라, '08년에 배합사료가격이 49%인상되어 **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**

■ 최근 국제곡물가격은 '08년 10월 이후 곡물수급의 개선, 세계 경기침체 우려, 달러강세 및 유가하락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의 복합적 요인이 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로 작용

- '09년 국제곡물가격(국내도착가격)은 전년 평균가격에 비해 옥수수△38.0%, 대두박△13.6, 소맥△33.8% 하락('09.1월 기준)

\* 옥수수 326\$ → 202, 대두박 472 → 408, 소맥 405 → 268

- **수급적 원인**

-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세계 밀의 생산량 증가

- \* 세계 밀 생산량 : (07/08) 611백만톤 → (08/09) 683 (11.8% 증가)

- 수요감소 및 식부면적 증가로 세계 콩 재고량 및 생산량 증가

- \* 세계 콩 생산량 : (07/08) 221백만톤 → (08/09) 236 (6.7% 증가)

- \* 세계 콩 재고량 : (07/08) 53백만톤 → (08/09) 54 (1.9% 증가)

- **BDI(Baltic dry index :국제 운임지수)도 '08.11월부터 평균 92% 하락(10,542p→837p)하여 곡물운임 부담 감소**

\* BDI 지수 : ('07.11) 10,542p → ('08.5) 10,843 →('08.11) 837

### 2. 배합사료 가격 관련 전망

■ 국제곡물 가격은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
- 밀 : '08년 상반기 강세가 지속되었으나 재배면적의 증가 등 요인이 가격상승 압력을

해소시켜 당분간 하향 안정세 예상

- 옥수수 : 미국의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,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이 가격하락세 전망
- 콩 : 미국, 남미 등 주요 수출국들의 콩 식부면적의 증가가 생산량 증가를 견인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약세 전망

■ 최근 환율 폭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제조원가 상승 압박

- 2008년 원/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및 채권 매도 송금 증가,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으로 인해 환율이 대폭 상승

\* 환율동향 : ('07년 평균) 929원/\$ → (08.3) 980 → (08.6) 1,029 → (08.12)1,130 → ('09.1.28) 1,391

※ 환율 1% 변동시 배합사료 제조비용 0.6~0.65% 영향

- 다만, 세계 금융위기 회복 및 외환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예기치 않은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환율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
- 국내외 금융전망기관들은 금년 상반기를 지나며 세계 금융위기로 촉발된 폭등세가 멈추고 하락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

■ 금년 국제곡물가격은 상승세 둔화 혹은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

- 중·장기적으로 주요 사료용 곡물가격은 약세가 예상되나, 과거와 같은 저곡가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

## II. 사료정책

### 1.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확충

■ '09년 사료원료구매자금 예산에 사료원료가격 상승분 반영

- ('08) 839억원 → ('09) 1,339억원(신규 500억원)

■ 상환조건 완화를 통한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운용 도모

- 지원조건 : 2년거치 일시상환

### 2. 할당·양어관세 적용 확대

■ '09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('09.1.1시행)

- 할당관세 무관세 적용품목 : (당초) 3품목 → (확대) 17품목

- 당초(3개) : 옥수수, 매니옥펠렛, 대두
- 확대(14개) : 대두박, 유장, 겉보리, 매니옥칩, 동물성유지, 면실박, 당밀, 밀기울, 면실 피, 귀리, 면실, 알팔파, 비트 펄프, 주정박
- ※ 기대효과 : 연간 3,000억원 수준의 사료비 절감

■ 사료용 전지대두(연간 50천톤)를 '08년부터 양허관세 적용 추진('08.4.1 시행)

- (현행) 미적용 487% → (개선) 양허관세 적용 5%

■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: 연간 7,200억원 지원효과

- 영세율 적용기한 : 2008. 12. 31 → 2011. 12. 31(3년간)

### 3. 원료 구매방식 개선

■ 사료원료 공동구매 추진

- 현재 사료협회와 농협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료원료를 **공동구매** 토록 유도
  - 국제 곡물시장에서 구매 교섭력 강화, 해상운임 절감 등 실익이 있으나 업체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
-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**사료원료구매자금 우대 지원** 등을 통해 사료원료 공동구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유도

■ 국제 사료곡물 변동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

- 국제 사료곡물 가격 변동에 따른 사료원료 구매시스템 구축
- **해상운임**의 경우도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선적기준과 도착기준을 **탄력적으로 적용**하여 구매 추진

### 4. 원료 수입선 및 품목 다양화

■ 사료원료 수입선 다양화

- 미국 등 북미로 편중되어 있는 사료곡물 수입국을 **동남아, 중국 등으로의 다변화**하여 원료 구매의 안정성 확보
  - 수입비중('08년) : 미국 93%, 동남아 4, 유럽 2, 기타 1

■ 대체 사료자원 이용 확대

- 매니옥칩, DDGS(옥수수주정박), 매니옥주정박, 대두피 등 **저렴한 대체 원료 이용을 확대**하여 사료원료 품목 다양화

## 5. 양질 조사료 생산·이용 활성화 대책

### ■ 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

- 고급육 생산 및 사료비 절감 등을 위해 급여비율을 개선하고,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추진
  - 급여비율(조사료 : 배합사료) : ('07) 4 : 6 → ('12) 6 : 4
  - 국내생산량(천톤) : ('07) 3,618 → ('12) 5,335(증 1,717)
  - 재배면적(천ha) : ('07) 164천ha → ('12) 370(증 206)
- 동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하고, 제조비 지원대상을 하계 사료작물까지 확대('09부터)
  -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예산 : ('08) 414억원 → ('09) 729
    - 사일리지 제조비 : 5만원/톤 → 6, 운송비 : 4 → 6
    - 기계·장비비 : (현행) 130백만원(국고 30%, 지방비 40, 자담 40) → (조정) 150(국고 40%, 지방비 40, 자담 20)
- 간척지 및 50ha이상 들녘을 활용,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

### ■ 품질 개선 및 상품성 향상 추진

- 청보리 사일리지에 생산실명제 도입 및 품질평가 체계 구축으로 농가 및 연결체의 품질관리 도모
- 사일리지 포장형태를 대형 곤포에서 소포장 제품으로 다양화

### ■ 국내산 조사료를 활용한 사료공급 확대

- 국내산 조사료를 사용하는 조사료가공제조시설 설치 지원
  - 지원계획 : ('07) 6개소(36억원) → ('08) 6개소 → ('09이후) 매년 4~10개소
  - 지원조건 : 보조 60%(축발기금 30, 지방비 30), 자부담 40%

### ■ 국내 부존 사료자원 이용을 제고

- 벼짚 암모니아 처리 및 생벼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부존자원의 활용도 제고(보조 40%, 연간 33억원)

## 6. 해외개발을 통한 사료곡물 확보 방안

### ■ 해외 사료곡물 확보 추진

- 곡물 수출국인 미국 또는 수출 잠재력이 있으나 유통시설이 미비한 동남아 등에 저장시설을 설치·운용할 경우 사료곡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- 진출대상국은 우선 사료곡물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수출 잠재력이 있으나 유통·저장 체계가 미비한 동남아 등이 있음

※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종합상사가 미국의 주산지 또는 집산지에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용 중

- 해외농장 개발이나 사료곡물 저장시설(Silo) 설치·운영 등에 대해서는 민간이 투자하여 추진하되, 정부는 해외농장 농기계·장비 구입자금 및 저장 시설운영 자금지원 및 대화협력 관계 등을 협조

#### ■ 민간업체 해외 사료자원 개발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

- 농기계, 창고 등 농장운영비, 유통시설 설치·운영비 등 지원
- ※ '09년 예산 210억원(농지관리기금)

## 7.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

#### ■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1조원 추가 지원

- 지원대상 :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(계열화업체 농가 제외)
- 농가당 지원한도 : 한육우·낙농 100백만원, 양돈 200, 양계·오리·기타 50
  - ※ 농신보 특례보증 : 일반축산농가(한육우, 낙농 등) 50백만원, 양돈 100
- 지원예산 : 1조원
- 지원조건 : 연리 1%, 소 1년거치 2년 분할, 돼지·닭·기타 2년 분할
- 지원방법 : 농협중앙회 자금 지원후 축산발전기금 이차보전사업비 활용
- 대출취급기관 : 농협 및 지역 농·축협 등

## 8. HACCP 인증확대 등 사료 위생·안전성 강화

#### ■ 사료공장 HACCP 인증 확대

- 인증받은 업체는 사료원료구매자금시 우대, 인증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로 사육하는 브랜드 경영체는 브랜드사업 대상자선정 및 추진실적 평가시 가점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추진
- '06~'07 HACCP 인증 사료공장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
  - 현장실사반 구성 : 검역원 및 시·도 담당자
  - 점검시기 : 최초 지정후 1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실시
  - 사후관리 평가
    - 사료공장 HACCP고시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실사상황을 평가

- 사후관리 초기에는 인증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되, 업무정착시 현장실사반에 의해 인증결정 하는 방안 강구
-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
  - 중결함 1개이상 또는 경결함 6개 이상 지적시 : 인증취소
  - 경결함 5개이하 지적시 : 보완후 재인증, 사후관리 실시
  - 지적사항 없을 경우 : 2년간 사후관리 생략(자체적인 점검실시)

■ 사·도의 사료검사(3,900점) 및 농림수산식품부 현장검사 실시

- 양축용 사료의 일반성분 및 안전성(BSE, 멜라민관련 성분 : 3,750점
  - 사료검사기관(사·도)에서 시료를 수거, 농관원에 검정의뢰
- 어류용 배합사료의 일반성분 및 안전성 관련 검사 : 150점
  - 사료검사기관(사·도)에서 시료를 수거, 수산과학원에 검정의뢰
- 농림부 현장검사 실시 : 상·하반기 각 1회씩 2회 검사

■ 사료안전성 교육·홍보

- 사료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료제조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책·선진사례 등에 대한 홍보 강화('09 예산 : 23백만원)

9. 사료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

가. 추진실적

-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 자율성 확보를 위해 사료관리법 전부개정 ('08.3.22)
- 사료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견수렴('08.3.28~6.2)
- 사료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(안) 마련(6.3~8.26)
- 사료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(안) 협의회 개최(8.27)
- 사료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(안) 관계부처 의견조회(11.27~12.7)

나. 주요 개정내용

< 시행령 >

-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(안 제4조)
  - 사료의 원료관리,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법인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·고시토록 함
  - 담당기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, 기준준수 여부 등 심사,

운용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 수행

-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·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를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(안 제5조, 제6조)

### < 시행규칙 >

-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중 미설치 승인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서 시·도지사로 규제완화(안 제6조 별표 1내지 3)
- 사료제조업의 휴업·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에 관한 신고절차, 제조업 승계절차를 신설(안 제7조 제3항, 제8조 신설)
-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·운용,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및 취소,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여부에 관한 심사, 교육·훈련 등 신설(안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 신설)
- 사료안전성이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 신설)
- 효과적인 사료검정업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방법을 사용 가능 하도록 함(안 제29조 제2항 신설)
-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사료공장의 지정 및 교부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정함(안 제40조)

### 다. 향후 조치계획

-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: 1. 15 ~ 2. 4
-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: 2. 20
- 시행령 차관회의·국무회의 : 2. 28
-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: 3. 22 